

#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         |
|--------|---------|
| 선<br>결 | 기 관 의 장 |
|        |         |

제 20 호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636호 (청결유지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647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65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661호 (「인천광역시 영종구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회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의회공고 제2026-2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폐기 공고)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영종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 청결유지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1. 공고제목 : 청결유지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3. 공고대상

| 순번 | 성명        | 주 소                                            | 대상지            | 처분내용        | 송달불가사유 |
|----|-----------|------------------------------------------------|----------------|-------------|--------|
| 1  | (주)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4<br>뉴올림피아상가 505호(5호-2)(중앙동) | 영종구 중산동 1873-7 | 청결유지명령 (3차) | 폐문부재   |

- 4. 조치내용 : 2026. 10. 16.(금)까지 대상지 청결유지 이행(방치폐기물 처리)
- 5.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6.(금) (16일간)
- 6.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결유지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자원순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청 자원순환과 생활청소팀(☎032-760-7406, FAX.032-760-74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I.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1. 공시 기준일 : 2026. 6. 1.
2. 결정·공시일 : 2026. 9. 30. (수)
3. 공시대상 : 중산동 884-28 외 29호 (총 30호)  
※ 주택 유형 : 단독 20호, 다가구 5호, 주상복합 5호
4.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29.(목)
5. 공시내용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주건물용도, 개별주택가격 등
6. 열람방법 및 장소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방 문 : 영종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II.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29.(목)
2. 신 청 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 방 문 : 영종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우 편 : (우 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3층 영종구청 세무1과

### III.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

1. 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결과통지 : 이의신청 주택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함.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 - 165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제안이유

- 사회적 환경이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어, 사전 예방적 갈등관리체계 및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이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3조)

##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감사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갈등민원조정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 의견제출 주소 및 문의 연락처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4층  
감사실 (중산동)

▷ 연락처 : 032)760-7077 [FAX : 032)760-7069]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의 기술과 방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인천광역시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구 본청 소속 실·국·과장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⑩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

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활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제14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1조에 의한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용]

# 주민 의견수렴서

|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연락처  |  |
| 의견제출 내용                                                                                                       |  |      |  |
|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 제출일자 :        년     월     일<br/>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div> |  |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61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 법 예 고

#### □ 제 안 이 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 요 내 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책무(안 제2조)
-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자문(안 제3조 ~ 제4조)
- 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안 제5조 ~ 제8조)
- 마.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9조)
- 바. 재정지원, 홍보 및 표창(안 제10조 ~ 제11조))

## □ 의 건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중산동),  
6층 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
- ▷ 전 화 : 032-760-6893 (FAX 032)760-6899)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의 활성화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2026. . .

제출자: 환경위생과장

## 1.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책무(안 제2조)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자문(안 제3조~제4조)

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안 제5조 ~ 제8조)

마.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9조)

바. 재정지원, 홍보 및 표창(안 제10조~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라. 기타

- 규제사전심사: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의 활성화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용]

# 주민 의견수렴서

|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연락처  |  |
| 의견제출 내용                                                                                                                                          |  |      |  |
|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제출일자 :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제출인 :                       (인 또는 서명)</div> |  |      |  |

## 공인 폐기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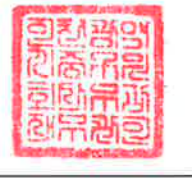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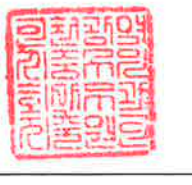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인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 인천광역시영종구의회의장

- 공인 폐기일 : 2026. 9. 30.(수)
- 공인 폐기사유 : 2026. 7. 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인 폐기
- 폐기 공인내역 : 17개

| 연 번 | 공 인 명        | 규격 및 글씨체                    | 인 영                                                                                   |
|-----|--------------|-----------------------------|---------------------------------------------------------------------------------------|
| 1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인   | 3.6cm * 3.6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2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인 | 2.4cm * 2.4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                              |                             |                                                                                       |
|----|------------------------------|-----------------------------|---------------------------------------------------------------------------------------|
| 3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인         | 2.4cm * 2.4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4  | 인천광역시중구의회도시정책위원회위원<br>장인     | 2.4cm * 2.4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5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br>인       | 2.4cm * 2.4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6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br>장인     | 2.4cm * 2.4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7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br>회위원장인   | 2.1cm * 2.1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8  |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br>회위원장인 | 2.1cm * 2.1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9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장인               | 2.1cm * 2.1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10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재무관인             | 2.0cm * 2.0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11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지출원인             | 2.0cm * 2.0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                            |                             |                                                                                       |
|----|----------------------------|-----------------------------|---------------------------------------------------------------------------------------|
| 12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징수관인           | 2.0cm * 2.0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13 | 인천광역시중구소관일반회계의회사무과<br>지출원인 | 2.0cm * 2.0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14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물품관리관인         | 2.0cm * 2.0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15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물품출납원인         | 2.0cm * 2.0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16 |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분임물품출납<br>원인   | 2.0cm * 2.0cm<br>한글전서체 가로새김 |   |
| 17 | 인천광역시중구의회계인                | 1.1cm * 3.0cm<br>한글전서체 세로새김 |  |